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12. 화순군수

나. 회 부 일 자 : 2002. 12.

다. 상 정 일 자 : 2002. 12. 10

(제108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김 종 철

나. 개정사유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의 과다 등으로 감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 청구인수를 낮춰 조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20세이상의 주민 500여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낮춰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안제2조)
-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화순군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 주민수의 과다 등으로 감사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해 청구인수를 낮춰 조정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장현범)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주민감사청구가 연서 주민의 과다로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행정자치부 및 전라남도의 권고가 있어 그 연서 주민수를 500명에서 200명으로 낮추는 개정조례안입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보다 적극적인 감사청구를 통한 군정참여가 활성화 되어 보다 투명한 군정을 구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으로 검토됨.

○ 본 개정안의 법규상,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결의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의결”

첨 부 :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화순군주민감사청구주민수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00명 이상”을 “200명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청구 주민의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수는 <u>500명 이상</u> 이어야 한다.	제2조(감사 청구 주민의수)----- ----- ----- -----200명 이상-----.